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 문 자	지 광 천 위 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교육체육과장)	일 자	질의	2018년 12월 4일
			답변	2018년 12월 5일
회 의	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(4)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질문요지

- 평창FC 협약서를 제출바람

답변내용

평창FC 운영(협약서 제출) 관련 협약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.

○ 협약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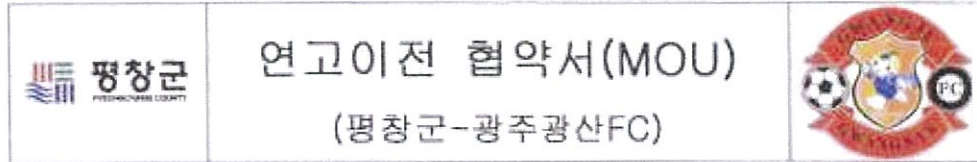
- 사 업 기 간 : 2015. 1월 ~ 2019. 12월(5년)
- 사업비지급 : 연간 200,000,000원(금이억원)
- 주요협약내용(협약서 별첨)
 - ▶ 선수단 전원 평창군으로 주소 이전
 - ▶ 동계/하계 전지훈련 캠프의 평창군 관내 시행(40일 전후)
 - ▶ 외부 전지훈련팀 10~15팀 유치에 적극 노력
 - ▶ 평창군 관내 선수 등록에 적극 협조
 - ▶ 관내 고등학교 출신 선수 1~3명 호남대 축구학과 입학 추천
 - ▶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 육성지원금 일부보조
 - ▶ 평창군 홍보에 적극 협조
 - ▶ 홈경기는 평창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개최
 - ▶ 협약내용 미이행 시 협약기간 만료이전 협약 해지가능

○ 예산내역(2019 당초)

- 출 전 비 지 원 : 금200,000,000원(금이억원)
- 홈경기운영비 : 금27,000,000원(금이천칠백만원)

- “협약내용 미이행시 협약기간 만료이전 협약 해지가능” 항목에 대하여 (2018. 7월 검토)
 - 평창군 자문변호사(영월 김태연) 고문을 통해 “협약내용 미이행으로 간주되는 건들이 이행 ‘노력’에 관한 사항임과 미이행 내용의 경중이 가볍다는 점을 근거로 협약 중도해지 시 수반될 소송절차 상 승소가능성이 낮아보인다.”는 의견을 통해 협약기간 만료 이전 중도해지는 부적합하다고 결정.
 - 재협약 사항은 계약 만료기한인 2019. 12월의 5개월 전인 7월 이전에 의사 전달 계획.

<별첨>



제1조(목적) 평창군과 광주광산FC(이하 "광산FC"라 한다)는 연고이전협약 및 챌린저스리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한다.

제2조(기관 참여와 협조) '평창군'은 '광산FC'가 평창군으로 연고이전을 하고, 챌린저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경기 운영에 관한 환경적 여건을 지원하고 광산FC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의 내용을 준수한다.

1. '광산FC'는 연고이전협약서(MOU)에 따라 'HAPPY700 평창군민축구단: 평창FC(이하 "평창FC"라 한다)'로 팀명을 변경해야 한다.
2. '평창FC'는 연고이전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.

제3조(사업비 지급)

- ① 평창군은 평창FC의 사업 운영비를 협약에 따라 성실히 지급해야 하고 평창FC는 사업비를 사업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.
 1. 사업기간 : 2015.01 - 2019.12(5년)
(단,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)
 2. 연간 사업비 : 금200,000,000원(금이억원)
- ② 플레이오프, 챔피언 결정전, FA컵 진출시 연간 사업비(2억원)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당 5,000,000원(오백만원)의 출전비를 지급한다.
- ③ 사업비(출전비) 신청, 집행, 정산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라야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)

'평창군'과 '평창FC'는 사업계획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 내용)

- ① 협약 유효기간 동안 팀의 명칭은 평창군에서 정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② 협약 유효기간 동안 대한축구협회 등록 대표자(구단주)는 평창군수로 하며 단장 및 구단의 인사보직 변경의 권한은 단장(정재훈)이 갖는다.
- ③ 본 사업 진행(챌린저스리그 참가) 중 유니폼 및 기타를 이용하여 후원 기관이 평창군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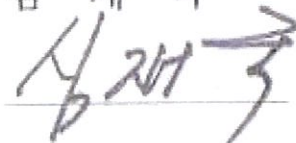
를 밝혀야 하고, 그 외의 후원서는 평창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니폼 및 A보드 등에 부착할 수 있다.

- ④ 연고지 평창이전시 선수단 전원은 평창군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.
- ⑤ 동계/하계 전지훈련 캠프는 평창군 관내로 해야 하고 기간은 연간 40일을 전후로 해야 하며 기후 및 시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지훈련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. 평창군은 전지훈련에 필요한 외부 전지훈련팀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.
- ⑥ 평창FC는 동계/하계 전지훈련을 위한 외부 축구 팀 10~15팀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.
- ⑦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평창군 관내 선수 등록을 적극 협조한다. 단 등록된 선수는 모든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기량을 인정받아야 한다.
- ⑧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출신 선수 1-3명은 호남대학교 축구학과에 임학을 추천한다. 단 대학 특기자 전형 입시 요강에 충족해야 한다.
- ⑨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유스팀 장단에 적극 협조하고, 발전 육성지원금을 일부 보조한다.
- ⑩ 어웨이 경기시 평창군 및 동계올림픽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.
- ⑪ 선수단 이동 버스(구단버스)에 평창군 올림픽 홍보물을 부착한다.
- ⑫ A-보드 및 광고 수익은 전액 평창군 수입으로 한다.
- ⑬ 평창FC 선수는 계약기간 군입대자는 상근으로 추천하여 병역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협조를 평창군에서 적극 알선한다.
- ⑭ 출경기 시 경기 진행은 평창군(평창군축구협회)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준비해야 한다.
- ⑮ 본 협약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협약 기간에 따른다.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5개월 전 재협약 건에 대해 상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"평창군", "광주광산FC" 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1월 27일

평창군
군수 심재국



광주광산FC
단장 장재훈

